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WT/MIN(22)/33 - WT/L/1144 문서의 각료회의 결정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 1가는,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할 때,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2. 이 의정서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다.
3. 이 의정서는 이로써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효한다.<sup>1)</sup>
5.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제3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각 수락 통보를 각 회원국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6.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현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22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

1)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락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유럽연합 그 자체와 그 회원국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제출한 수락서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와 동일한 수의 회원국이 수락한 것으로 계산한다.

## 부속서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 따라 특정적이고 그 협정 제1.1조의 의미에 따른 보조금 중 바다에서의 해양야생포획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된다.<sup>1)2)3)</sup>

####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어류”란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양생물자원 종을 말한다.
- 나.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나 수확을 말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나 수확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다. “어업 관련 활동”이란 바다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전에 항구에 양륙된 적이 없는 어류의 양륙, 포장, 가공, 전재 또는 운송을 포함하여, 어업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 라. “선박”이란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하여 장비를 갖추었거나, 사용이 의도되는 모든 선박, 그 밖의 형태의 배 또는 보트를 말한다.
- 마. “운영자”란 선박의 소유자나 선박을 책임지거나 지휘 또는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식 및 내수면 어업은 이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어협정에 따른 정부 간 지불은 이 협정에 의미에 따른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목적상, 보조금은 관련된 선박의 국기 또는 등록지나 수령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것을 제공하는 회원국에 귀속된다.

### 제3조

####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sup>4)</sup>에 기여하는 보조금

3.1 어느 회원국도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또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지원하는 어업 관련 활동에 관여한 선박 또는 운영자<sup>5)</sup>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3.2 제3.1조의 목적상, 선박 또는 운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긍정 판정을 받은 경우,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sup>6)7)</sup>

가. 자국 관할수역 내의 활동에 대하여, 연안 회원국, 또는

나. 자국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의 활동에 대하여, 기국인 회원국, 또는

다. 적시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수산관리 기구/약정의 규칙 및 절차와 관련 국제법에 따라,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의 권한하에 있는 수역 및 어종에 대하여,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

3.3 가. 제3.2조에 따른 긍정판정<sup>8)</sup>은 어떠한 선박 또는 운영자가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관여했다고 회원국이 최종 조사한 결과 그리고/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에 의하여 최종 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나. 제3.2조가호의 목적상, 제3.1조에 따른 금지는 연안 회원국의 판정이 관련 사실 정보에 기반하고, 연안 회원국이 기국인 회원국에 그리고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지급 회원국에 다음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1) 관련 사실 정보, 적용 가능한 법, 규정, 행정절차 또는 그 밖의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관련

4)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이란, 2001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한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예방 · 방지 ·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제시된 활동을 의미한다.

5) 제3조의 목적상, “운영자”란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위반 시점에 제2조마호의 의미에 따른 운영자를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관여한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유지의 금지는 바다에서의 어업 및 어업 관련 활동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적용된다.

6) 이 조의 어느 내용도 회원국이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판정을 내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이 조의 어느 내용도 목록에 등재된 실체의 관련 국제협정에 따른 권한에 영향을 주거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판정을 내릴 때 목록에 등재된 실체에게 새로운 권리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8) 이 조의 어느 내용도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판정을 지연시키거나, 그 판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선박 또는 운영자가 임시로 억류되었다거나 연안 회원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내용의 적절한 경로를 통한 적시 통보

- (2) 관련 정보가 최종 판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정 이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할 기회.<sup>9)</sup> 연안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그리고
- (3) 최종 판정 및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 적용된 제재에 대한 통보

연안 회원국은 궁정판정을 제9.1조에 규정된 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 통보한다.

3.4 보조금지급 회원국은 제3.1조에 따른 금지의 적용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선박 또는 운영자가 행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성격, 중대성 그리고 반복성을 고려한다. 제3.1조에 따른 금지는 적어도 금지를 발동시킨 판정으로 인한 제재<sup>10)</sup>가 유효한 기간이나 적어도 선박 또는 운영자가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적용된다.

3.5 보조금지급 회원국은 제3.1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제8.3조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다.

3.6 항만국이 자국 항만에 있는 어선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보조금지급 회원국에 통보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회원국은 접수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대로 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3.7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제3.1조에 언급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규정 그리고/또는 행정 절차를 갖춘다.

---

9) 예를 들어, 이는 기국인 회원국 또는 보조금지급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대화하거나 서면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포함할 수 있다.

10) 제재의 종료는 제3.2조에서 언급된 판정을 내린 당국의 법이나 절차에 규정된 대로 이뤄진다.

3.8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 회원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보조금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이 협정 제3.1조 및 제10조에 따른 행위로부터 면제된다.

#### 제4조 남획된 어족 관련 보조금

4.1 어느 회원국도 남획된 어족에 관한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4.2 이 조의 목적상, 어업이 이루어지는 수역을 관할하는 연안 회원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의 권한하에 있는 수역 및 어종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이 이용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남획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어족은 남획된 어족이다.

4.3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조치가 해당 어족을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sup>11)</sup>으로 복구시키기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 회원국은 제4.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4 최빈개도국인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 회원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보조금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이 협정 제4.1조 및 제10조에 따른 행위로부터 면제된다.

#### 제5조 그 밖의 보조금

5.1 어느 회원국도 연안 회원국 또는 연안 비회원국의 관할 밖에 있고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의 권한 밖에 있는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11) 이 조의 목적상,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은 최대지속가능산출량(MSY)과 같은 참조점이나 해당 어업에 대해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상응하는 그 밖의 참조점을 사용하여 어업이나 어업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연안 회원국에 의하여, 또는 그 수역과 어종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준이다.

5.2 회원국은 자국 깃발을 게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히 자제한다.

5.3 회원국은 상태를 알 수 없는 어족에 관한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히 자제한다.

## 제6조

### 최빈개도국인 회원국을 위한 특별 규정

회원국은 최빈개도국인 회원국이 관련된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하며, 관련된 최빈개도국인 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제7조

###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이 협정에 따른 규율의 이행을 목적으로 최빈개도국인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 회원국에 맞춤형 기술지원과 역량구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 지원을 위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및 국제농업개발기금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자발적 세계무역기구 기금 체제가 설치된다. 그 체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기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정규 예산 자원은 활용하지 않는다.

## 제8조

### 통보 및 투명성

8.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를 저해하지 않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통보를 강화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의무의 이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 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른 수산보조금에 대한 정기 통보의 일환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sup>12)<sup>13)</sup></sup>
-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 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
  - 나. 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른 수산보조금에 대한 정기 통보의 일환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sup>12)<sup>13)</sup></sup>
- (1)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에서 어족의 상태(예를 들어,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최대로 어획되거나, 저개발된 상태) 및 사용된 참조점, 그리고 그러한 어족이 다른 회원국과 공유되는지<sup>14)</sup> 또는 지역수산 관리기구/약정에 의하여 관리되는지 여부
  - (2) 관련 어족을 위하여 시행 중인 보존 및 관리 조치
  - (3)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의 선단 능력
  - (4)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받는 어선 또는 선박의 명칭 및 식별번호, 그리고
  - (5) 보조금이 제공되는 어업의 어종별 또는 어종 그룹별 어획 데이터<sup>15)</sup>

8.2 각 회원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긍정판정한 선박 및 운영자 목록을 위원회에 매년 서면으로 통보한다.

8.3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제시된 금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절차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거나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린다. 각 회원국은 해당 조치의 이후 변경 사항과 제3조에서 제시된 금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새로운 조치 또한 위원회에 신속히 알린다.

12) 제8.1조의 목적상, 회원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라 요구되고 G/SCM/6/Rev.1과 같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가 사용하는 설문지에 명기된 대로 모든 정보에 추가하여 이 정보를 제공한다.

13) 최빈개도국인 회원국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회람한 대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데이터에 따라 세계 해양 포획 생산량의 연간 비중이 0.8퍼센트를 넘지 않는 개발도상 회원국에는 이 호의 추가 정보에 대한 통보는 4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

14) “공유 어족”이란, 두 개국 이상의 연안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와 그 바깥 및 인접수역 모두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을 지칭한다.

15) 복수 어종 어업에 대해서, 회원국은 다른 관련되고 이용가능한 어획 데이터를 대신 제공할 수 있다.

8.4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이 협정과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참고하여 자국의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이후 수정 사항을 위원회에 신속히 알린다. 회원국은 이 정보를 제시하는 회원국의 웹페이지나 그 밖의 적절한 공식 웹페이지의 최신 전자 링크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8.5 회원국은 통보를 한 회원국에 이 조에 따라 제공된 통보 및 정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통보를 한 회원국은 그 요청에 가능한 빠르게 서면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답변한다. 회원국이 이 조에 따른 통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회원국은 그러한 다른 회원국에 그 사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위원회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8.6 회원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자국이 당사국인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통보는 적어도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을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문안, 그 권한하에 있는 수역 및 어종, 관리 어족 상태에 대한 정보,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설명,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판정을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정한 어선 및/또는 운영자의 최신 목록으로 구성된다. 이 통보는 개별적으로 또는 회원국 그룹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sup>16)</sup> 이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은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이 조에 따라 통보된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 목록을 유지한다.

8.7 회원국은 조치에 대한 통보가 (가) 1994년도 GATT,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법적 지위, (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효과, 또는 (다) 조치 그 자체의 성격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8.8 이 조의 어느 내용도 비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16) 이 정보를 제시하는 회원국의 웹페이지나 그 밖의 적절한 공식 웹페이지의 최신 전자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 제9조 제도적 장치

9.1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수산보조금 위원회가 이로써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신의 의장을 선출하고, 연 2회 이상 그리고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하며 회원국에 이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9.2 위원회는 제3조, 제8조 및 이 조에 따라 제공될 모든 정보를 적어도 2년마다 심사한다.

9.3 위원회는 매년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그 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위원회는 매년 그러한 검토에서 다루어진 기간 동안의 진전 사항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알린다.

9.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특히 이 협정의 이행에서 얻은 경험을 유념하여, 이 협정의 문안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9.5 위원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및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을 포함한 수산 관리 분야의 그 밖의 관련 국제 기구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 제10조 분쟁 해결

10.1 이 협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상술하고 적용하는 대로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sup>17)</sup>

10.2 제1항을 저해하지 않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sup>18)</sup>의 규정은 이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 제11조 최종 규정

11.1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느 내용도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금인 경우 회원국이 재해<sup>19)</sup> 구호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가. 특정 재해의 구호에 한정된 경우
- 나. 영향을 받은 지리적인 수역에 한정된 경우
- 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 라. 영향을 받은 어업 그리고/또는 영향을 받은 선단을 재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한정하여, 복원 보조금인 경우

11.2 가. 이 협정(이 협정에 관한 모든 조사결과, 권고 및 판정을 포함한다)은 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

- 나.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해양경계획정 관련 주장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sup>20)</sup>

11.3 이 협정의 어느 내용도 해양법<sup>21)</sup>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할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17)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및 다호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6조는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18) 이 조의 목적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의 “금지보조금”은 이 협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의 금지 대상 보조금을 말한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경제 또는 금융 위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20) 이 제한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인에게도 적용된다.

21)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의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다.

11.4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느 내용도 회원국이 당사국 또는 협력적 비당사국이 아닌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의 조치나 결정에 구속되거나 그러한 지역수산관리기구/약정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1.5 이 협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부여하는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 제12조

### 포괄적인 규율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협정의 종료

포괄적인 규율이 이 협정의 발효 후 4년 내에 채택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일반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은 즉시 종료된다